

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가합114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혁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담당변호사 성예지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000,000원과 그 중 별지 목록 1, 2 ‘인출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목록 1, 2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해당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1. 3.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셋을 두고 있다. C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2018드합50922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같은 법원 2019드합51113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1. 28. 본소에 의하여 C와 원고는 이혼하고, 원고가 C에게 위자료료 1,500만 원, 재산분할로 16억 8,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C와 원고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1. 18. 위 재산분할 금액을 16억 8,4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고등법원 2020르10026(본소), 2020르10033(반소)], 위 판결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므15193(본소), 2020므15209(반소), 이하 ‘관련 이혼소송’이라 한다].

나. 원고와 C는 1991. 8. 10.경부터 원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철물점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원고의 조암농협 계좌(D)에서 별지 목록 ① 기재와 같이 2010. 11. 22.부터 2013. 3. 25.까지 합계 2,95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고, 원고의 화성새마을금고 계좌(E)에서 별지 목록 ② 기재와 같이 2010. 12. 17.부터 2017. 10. 30.까지 합계 1억 9,15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다(이하 위 각 계좌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계좌’라 한다).1) 라. 원고는 ‘피고 및 C가 출금전표를 위조행사하여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와 C를 고소하였으나, 2019. 2. 1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8,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의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2억 2,100만 원(= 조암농협 계좌 2,950만 원 +

화성새마을금고 계좌 1억 9,15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 17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예금을 무단 인출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이를 부당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사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원고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의 상당 부분은 이미 폐기되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고, 지급제시인이 수표의 입수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그 유통경로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에 2013. 3. 5.자 100만 원권 수표, 2014. 3. 24.자 1,000만 원권 수표, 2014. 6. 27.자 100만 원권 수표는 원고의 다른 계좌에 입금되는 등 원고가 실제 사용자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2013. 3. 5.자 100만 원권 수표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무단 인출을 이유로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8년경 주택 신축사업을 위해 마이너스 통장 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경기 악화로 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2018. 1.경 C가 가출한 직후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10년 동안 철물점 사업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잔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도 개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위 계좌의 거래내역 중에는 2010. 1. 11. I 변호사에게 2,000만 원을 이체한 내역 등 원고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병존하고 있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와 원고의 ‘사업자통장’ 계좌 사이의 거래가 다수 존재하고, 당해 거래 시에 작성된 출금전표의 필체 등에 비추어 그 거래는 피고 또는 C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원고의 2021. 6. 7.자 준비서면),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통장’을 이용하여 원고 모르게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거래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내지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원고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④ 피고의 이 사건 각 예금의 인출은 모두 C와 원고가 부부로서 함께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C가 원고 명의 계좌와 도장을 관리하던 때에 이루어졌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예금 인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C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C가 원고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고소하였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되어 그 명목을 확인할 수 없는 출금내역을 추려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⑤ 관련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와 C가 원고의 돈을 인출하여 피고 명의로 화성시 J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K에게 전매하여 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지 매수인인 K이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매매계약을 작성할 때 등기명의자인 피고 이외에 원고도 동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은 배척되었다. 위 K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7. 6. 23. 피고에게 ‘신한 L M회사 계약금은 100만 원이며 만약 그냥 선수금 한방에 넣으실 꺼면 24,306,800원 넣어주셔도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비록 원고의 처형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원고와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고 또는 C의 동의하에 원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옥, 판사 염혜수, 판사 조호연

별 지 목 록 1

순 번	일시	인출계좌	인출금액	인출방식	지연이자 기산일	비 고
1	2010. 11. 22.	농협조암지점 	5,000,000	현금	2010. 11. 23.	
2	2010. 12. 3.	"	3,500,000	현금	2010. 12. 4.	
3	2011. 3. 23.	"	3,000,000	현금	2011. 3. 24.	
4	2012. 2. 22.	"	3,000,000	수표	2012. 2. 23.	
5	2012. 8. 6.	"	6,000,000	현금	2012. 8. 7.	
6	2012. 8. 27.	"	3,000,000	수표	2012. 8. 28.	
7	2013. 3. 4.	"	3,000,000	현금	2013. 3. 5.	
8	2013. 3. 5.	"	1,000,000	수표	2013. 3. 6.	
9	2013. 3. 5.	"	1,000,000	현금	2013. 3. 6.	
10	2013. 3. 25.	"	1,000,000	수표	2013. 3. 26.	
합 계			금 29,500,000원			

별 지 목 록 2

순 번	일시	인출계좌	인출금액	인출방식	지연이자 기산일	비 고
1	2010. 12. 17.	화성 새마을금고	1,500,000	현금	2010. 12. 18.	
2	2014. 1. 15.	"	16,000,000	현금	2014. 1. 16.	
3	2014. 2. 11.	"	5,000,000	수표	2014. 2. 12.	
4	2014. 2. 20.	"	10,000,000	수표	2014. 2. 21.	
5	2014. 3. 24.	"	15,000,000	현금	2014. 3. 25.	
6	2014. 4. 8.	"	3,500,000	현금	2014. 4. 9.	
7	2014. 6. 27.	"	20,000,000	수표	2014. 6. 28.	
8	2014. 9. 11.	"	9,000,000	수표	2014. 9. 12.	
9	2014. 11. 28.	"	5,000,000	현금	2014. 11. 29.	
10	2014. 12. 15.	"	5,000,000	현금	2014. 12. 16.	
11	2014. 12. 18.	"	5,000,000	현금	2014. 12. 19.	
12	2015. 1. 29.	"	3,000,000	현금	2015. 1. 30.	
13	2015. 3. 11.	"	3,000,000	현금	2015. 3. 12.	
14	2015. 3. 27.	"	3,000,000	현금	2015. 3. 28.	
15	2015. 6. 10.	"	20,000,000	현금	2015. 6. 11.	
16	2015. 12. 15.	"	5,000,000	현금	2015. 12. 16.	
17	2016. 1. 13.	"	5,000,000	현금	2016. 1. 14.	
18	2016. 2. 3.	"	2,500,000	현금	2016. 2. 4.	
19	2016. 3. 3.	"	5,000,000	현금	2016. 3. 4.	
20	2016. 7. 1.	"	30,000,000	수표	2016. 7. 2.	
21	2017. 2. 21.	"	10,000,000	수표	2017. 2. 22.	
22	2017. 10. 30.	"	10,000,000	현금	2017. 10. 31.	
합 계			금 191,500,000원			

1) 별지 목록 1의 계좌번호 'G'은 계좌번호 'D'의, 별지 목록 2의 계좌번호 'H'은 계좌번호 'E'의 각
오기로 보인다.